

## 경운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거 경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대학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률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정보
2.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 없는 정보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제5조(정보공개 절차)**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별지 서식 2호)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기획조정처는 지체없이 관련 부서로 이관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⑤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는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제7조 제7항의 자료와 함께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01.>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자로서 임명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부서의 장이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사항
2. 제13조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할 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
2.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8조(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

개할 수 있다.

④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2조(청구인의 의무)** ①청구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취득한 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우리 대학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학내 구성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대학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에 문서(별지 4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 또는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심의회는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처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1.10.01.>

**부 칙 <2019.11.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시행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제5조 제1항)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 접수번호, 접수일은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	--

공개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경운대학교 정보공개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운대학교 총장 귀하

###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경 운 대 학 교 총 장

【별지 2호 서식】 <개정 2021.10.01.>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제6조 제2항)

“미래핵심산업 교육특성화대학”  
(A leading university specialized for aviation)



## 경운대학교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경운대학교 정보공개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경운대학교 총장

담당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처장

총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

우 3916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http://www.ikw.ac.kr

전화 054-479- /전송 054-479- /

/공개

【별지 3호 서식】 <개정 2021.10.01.> 정보 결정 통지서(제8조 제1항)



# 경운대학교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원	원	원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경운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경운대학교총장

담당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처장	총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3916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 http://www.ikw.ac.kr	
전화	054-479- /전송 054-479-	/	/ 공개

【별지 4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제13조 제1항)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경운대학교 정보공개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운대학교 총장 귀하